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제출자 : 평창군수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의 안 번 호	56
------------	----

제출년월일 : 2018. 11. 2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404,3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88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513백만원이 증액된 369,912백만원, 특별회계는 4,373백만원이 증액되어 34,421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30,430백만원, 세외수입 14,261백만원, 지방교부세 201,059백만원, 조정교부금 6,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09,147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015백만원 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07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822백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6,522백만원 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294,479백만원(예비비 3,000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21,24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19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2,774백만원, 재무활동 6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582백만원 임.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7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충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